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정일	2001.10.01
		개정일	2022.02.21
		주관부서	대학원교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대학원 학칙」 제29조(학위수여 및 종별) 및 제30조(명예박사학위 수여)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대학원이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논문에 관한 구술시험을 통과한 자,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수강하였거나 학위과제(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보고서 등의 연구실적물 등을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인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1.>

제2장 종합시험

제3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로 정한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별도의 종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매 학기(총 6회)에 시행되는 “성경읽기와필사” 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신한다. <개정 2021.3.1.>

제3장 외국어시험

제4조(외국어시험) ① <삭제 2022.2.1.> 학위과정의 학생 중 1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에게 외국어시험을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설 2022.2.1.>

제4장 논문제출·심사·공표

제5조(논문지도 신청)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 자격) 학위청구논문은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정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1.>

제7조(논문제출 기간) 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 학칙」 제1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재학연한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

②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③ 논문공표

가.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 공표방법은 학회지·국내외 학술지·정기간행물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및 기타 대학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한다.

제5장 교과목 추가수강, 학위과제 제출, 학위인정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제9조(신청) 학위논문제출을 대신하여 교과목 추가수강, 학위과제 제출, 학위인정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

제10조(응시자격) 교과목 추가수강, 학위과제 제출, 학위인정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응시자격은 종합 시험에 합격(예정) 또는 “성경읽기와필사” 과목을 모두 이수(예정)하고 지정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라야 한다.

제11조(학위과제 제출기간) 학위논문을 대신하는 학위과제 제출기간은 본 규정 제10조(논문제출 기간)에 정한 기간과 같다. <개정 2021.3.1.>

제12조(학위과제 심사) 학위과제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가가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3.1.>

제13조(학위인정시험) ① 학위인정시험은 해당 각 대학원장이 과목 및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하되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험실시와 관련된 세부 시행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4조(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①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의 심사는 5월,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의 심사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이상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

④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등의 개최는 교내 또는 교외의 연주, 전시 가능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장 학위수여

제15조(학위수여 심의와 결정)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일 전 소정의 기간내에 학위수여 자격을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제16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2월과 8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위수여 및 등록)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전공별·과정별·학위종별에 따라 학위기를 수여하고 등록한다.

제18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의 행위가 그 영예에 손상을 끼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학위취득 사실

이 입증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한 재학, 재적 또는 수료자의 경우 종전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구 규칙 시행 당시의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규칙관련 경과조치) 「대학원학위수여규칙」에서 ‘기독교신학대학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위수여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대학원 학위수여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